

.kr/.한국 도메인 이름 등록자 해외 주소지 허용

2017.9.15

강경란

다자간인터넷거버넌스협의회 도메인등록정책 워킹그룹

# 개요

- 「도메인이름관리준칙」에서 .kr/.한국 신청자/등록자 주소지를 국내로 제한하는 정책 개정
  - ◆ 해외 주소지를 가진 개인 및 기관도 등록 허용

## 도메인이름관리준칙

(중략)

### 제2장 도메인이름 등록 및 관리

제4조(등록 조건) ①신청인 및 등록인은 대한민국에 주소지가 있어야 한다.

(중략)

제11조(등록 말소) ①진흥원은 등록된 도메인이름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도메인이름 등록을 말소할 수 있다.

1.등록정보가 허위임이 확인된 날로부터 공휴일 여부와 상관없이 1개월이 경과한 경우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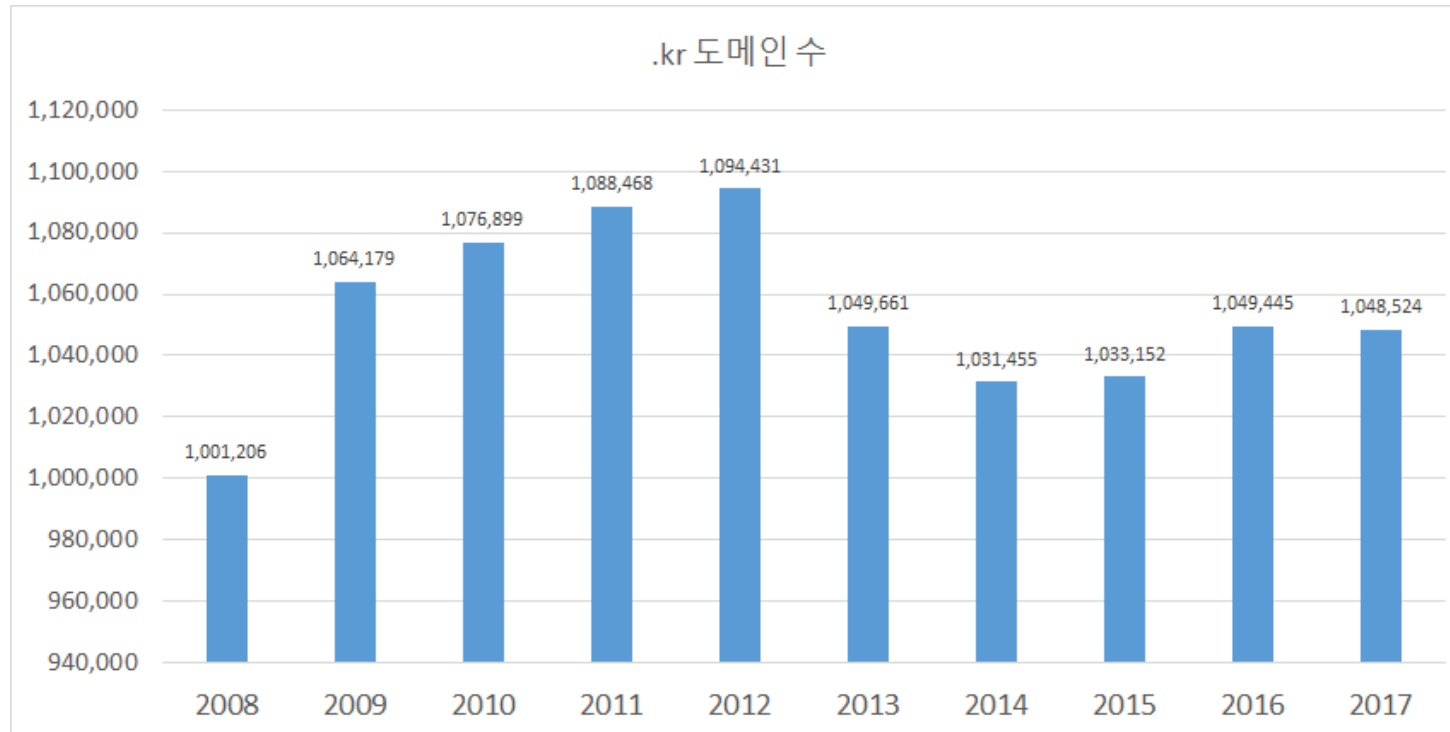
<개정 2015.7.16>

(후략)

# 정책 도입 필요성 (1)

## □ .kr/.한국 도메인 활성화

- ◆ .kr/.한국 의 최근 등록추이를 보면 신규 등록 및 총 등록 수 감소 추세
- ◆ 음성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해외 주소 개인 및 기관의 등록을 양성화
- ◆ 주소지 제한 정책을 폐지하여 .kr 및 .한국 도메인 등록 활성화



## 정책 도입 필요성 (2)

- 해외 법인과 개인 간의 .kr/.한국 도메인 등록 형평성 해결
  - ◆ 개인은 비교적 국내 주소지 확보가 용이하나, 법인은 국내 주소지 확보가 어려워 .kr/.한국 에 도메인 등록이 어려움
- 도메인 이름 관련 문제 발생 시 등록자 주소 추적 방법 확보
  - ◆ 현재 국내 대행업체 주소를 사용해서 도메인을 등록하는 사례의 경우, 대행업체가 주소지 공개를 거절하는 경우 주소를 추적할 수 없음
  - ◆ 공개적으로 해외 주소지를 등록하게 허용할 경우, 등록자 주소 추적이 더 용이해짐

# 해외 사례

## □ 일본

- ◆ “Non-Japanese corporations registered in Japan as "Gaikoku Kaisha (Foreign Company)" may also apply for a CO.JP domain name.”

## □ 미국

- ◆ “A foreign entity or organization that has a bona fide presence in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or any of its possessions or territories.
  - *Applicant must also (1) regularly engage in lawful activities (sales of goods or services or other business, commercial or non-commercial including not-for-profit activities) in the United States; or (2) maintain an office or other property within the United States.*”

## □ 영국

- ◆ “Where a registrant address is not within the United Kingdom, a UK address for service must also be supplied”

## □ 호주

- ◆ an Australian partnership or sole trader; or
- ◆ a foreign company licensed to trade in Australia; or
- ◆ an owner of an Australian Registered Trade Mark; or

# 정책 도입 시 고려사항 (1)

## □ 허용의 범위

- ◆ [의견1] 임의의 일반인이 .kr/.한국 하에 도메인을 등록하고자 하는 경우도 허용
- ◆ [의견2] 한국에서 business 등 관련된 활동을 하고 있다는 것을 증빙할 수 있는 자에 한해서 허용

## □ 해외 주소지의 정확성 여부 확인 방법

- ◆ [의견1] 등록 주소가 합리적인 방법으로 연락이 가능한 곳이 아닌 경우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(예, 호텔), 주소의 정확성을 보장할 수 있는 방법이 마련되어야 있어야 함
- ◆ [의견2] 주소의 정확성을 보장하기 위해, 해당된 국가에서 공증된 주소만 허용함 (공증 서류 제출 의무)
- ◆ [의견3] 연락처를 우편 주소에서 email로 변경하여 가입 시 도달 여부를 확인하고 더불어 연락의 신속성을 보장함
- ◆ [의견4] 등록된 주소가 잘못된 것이 확인된 경우, 「도메인이름관리준칙」 제11조(등록주소)에 의거하여 도메인 등록 취소를 적용할 수 있으므로, 등록자가 유의하여 등록할 것임

## 정책 도입 시 고려사항 (2)

### □ 분쟁 발생 시 적용할 규정

- ◆ [의견1] 「도메인이름관리준칙」, 「도메인이름관리세칙」 등 국내 도메인 이름 관련 정책이 집행되는 것으로 등록 시에 명시하여 등록자가 분명하게 인지할 수 있도록 함

### □ 해외 주소지 개방 시 등록대행업체의 추가 개발 비용 대비 영업 이익

- ◆ [의견1] 해외 주소 입력을 위한 화면 추가 개발 비용이 소요될 것이나, 이로 인한 도메인 등록 건 수 확대에 대한 기대가 낮음
- ◆ [의견2] 한류 확산 등 국내 시장을 대상으로 한 사업 수요가 있을 것으로 기대됨

## 결언

- 해외 주소지 개방을 통해 도메인 등록 활성화 기대
- 도메인 관련 분쟁 등 문제 발생 시 등록자와의 연락 보장 필요 등에 따라 해외 주소지 개방 정책에 대한 우려 많음